

정 관

2022. 12. 07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협회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영농공공폐자원관리협회” (이하 “협회” 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Agriculture Public Waste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약칭은 “KAMA” 라 한다)로 표시한다.

제2조(설립근거) 협회는 「민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목적) 협회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영농공공폐자원 등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거, 운반, 보관, 적정처리방법과 그와 관련된 조사·분석, 연구, 교육 등을 통해 농촌환경 보존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①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8로 227, 7층 701호에 둔다.

② 본회의 분사무소는 다음 지역에 둔다.

1. 북부권지부 :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 291번길 155
2. 남부권지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636

③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의 등기를 마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①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농폐자원 등의 조사·분석 및 기술혁신, 연구
2. 영농폐자원 등의 수거, 운반, 보관, 적정처리와 관련된 업무
3. 영농폐자원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4. 영농폐자원 관련 기관·협회 등과의 공동사업
5. 영농폐자원 관련 기술지원, 컨설팅, 정부정책 홍보, 교육 등
6. 기타 국가적 자연재난 폐기물 등의 수거, 운반 및 공공비축 관련 서비스 제공

② 협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 및 단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자격) ①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② 회원의 가입절차 및 회비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구성) 협회의 회원에는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하고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영농폐자원 등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
2. 준회원 : 협회의 사업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로서 정관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촉된 자
3. 단체회원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공익기관 등의 단체로서 협회의 입회를 희망하는 단체

제8조(권리와 의무) ① 협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1. 회비 및 이사회에서 정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
2. 협회의 정관 및 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준수할 의무
3. 회원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
4. 협회 회원으로서의 권한과 편익을 향유할 권리
5. 협회의 사업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6. 총회 및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
7.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정관에 따라 선출선임되는 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8. 준회원 및 단체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으며 기타의 모든 본회 행사에 참여하여 모든 혜택을 받는다.

- ② 회원은 협회 운영과 관련하여 협회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 ③ 협회의 회비는 가입비와 연회비로 구분하며, 부과 방법 및 액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회원이 내야 할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회원 : 가입비 및 연회비
 - 2. 단체회원 : 가입비 및 연회비 면제
 - 3. 준회원 : 가입비 및 연회비 면제
- ⑤ 회원의 지위와 권리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9조(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 1.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을 때
 - 2. 사망 또는 실종신고를 받았을 때
 - 3. 개인 또는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4. 폐업한 경우

제10조(제명) ① 협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차기총회에 보고한다.

- 1. 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 2. 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하였거나 협회의 목적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3. 1년 이상 연회비를 체납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기타 회원 상호간 교류 및 친목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여 분쟁의 소지를 남긴 자
- ② 회장은 회원의 권리를 정지할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전 해당 회원에게 서면 등으로 이에 대한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필요시 이사회에서 회원의 권리정지 및 제명에 대한 이사회 동의록을 얻어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자격상실에 따른 권리 및 의무) 회원이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회원으로서의 협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제8조에 따른 의무를 면한다.

제12조(신고)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협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기타 협회가 필요하여 규정 및 총회 의결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미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당해 회원에게 있다.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구성) ① 협회에 다음 임원을 두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12인(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이내
 4. 감사 1인
- ② 부회장은 상근임원으로, 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비상근 임원으로 한다.
- ③ 부회장은 폐기물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④ 법원에登記하여야 하는 임원은 비상근 회장과 임원(상근 부회장, 비상근 각 지부장)으로 하며,登記 여부로 인하여 권한을 제한받지 않는다.

제14조(고문과 자문) ① 협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영농폐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중요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 ④ 협회의 대외 협력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의 결로 비상근 전문직을 둘 수 있다. 다만, 임기 및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 ①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장은,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각 지부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하여야한다

④ 등기임원의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의 등기를 마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임원 중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되 이사와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2조(특수 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 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협회의 회원이 아닌 자 또는 회원자격이 정지·박탈된 자

제16조(임원의 해임) ①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1의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협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3. 협회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있을 때

4.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으로 협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켰을 때

5.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임원의 해임은 총회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부회장, 이사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회장 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제반사항의 처리
2. 임·직원의 직무분장과 임면 추천 및 지휘·감독
3. 기타 협회의 통상업무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의 통상 직무에 해당하는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이사는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총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사하고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한다.

1. 협회의 업무 및 회계 상황에 대한 감사
2. 이사회와 총회에 감사 결과의 보고
3. 회장에게 감사 결과에 관한 의견의 제시
4. 회장에게 부정·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위한 총회나 이사회 소집 제안

제18조(임원의 보수 등) ① 협회의 임원은 상근 임원을 제외하고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상근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상근 임원의 퇴직금은 협회의 별도의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및 일반이사 직위의 기간도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임원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협회의 상근 이사와 직원은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 이사의 경우 이사회를 거쳐 회장이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총회

제21조(구성과 기능) ①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보선·해임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제공,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승인
5. 회비와 분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22조(소집 및 의결)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의결이 있을 때
3. 협회 회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할 때
4.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제23조(소집절차) ①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총회의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 (의결사항)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수립 및 세출예산 편성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제공,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6. 회비와 분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목적 및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 ② 제1항 각 호 사항 중 사업계획 및 세출예산 편성 및 결산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정회원이 행사한다. 다만,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대리인의 출석 또는 서면의견 제출로써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결 제척사유) 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의장 또는 정회원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임시의장을 호선한다.

제27조(회의록) ① 총회의 모든 사항은 요약하여 회의록으로 남겨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협회에 보존하고 중요내용에 대한 것은 차기총회에 서류와 구두로 보고한다.

1. 개최일자 및 장소
2. 출석자 수
3. 의사경과와 결과

제5장 이사회

제28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9조(소집) ①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재 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대행한다.

②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과 소집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때
 3. 감사가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견되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보 시 서면, 전자 우편, 핸드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3. 사업계획 및 세출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 대여 및 차입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결원이 생긴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가입, 권리 정지 및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폐기물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정회원 승인에 관한 사항
 10. 조직과 직제의 구성과 직원의 임면, 의결 사항
 11.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회의 의결은 의결권이 있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3조의 위원회에 의결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그 경우 위원회의 의결은 이사회 의결로 본다.

제31조(의결 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② 회장이 제1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의장직을 대행한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제1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임시의장을 호선한다.

제32조(회의록) ① 이사회의 모든 사항은 요약하여 회의록으로 남겨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이사 2인 이상 및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협회에 보존하고 중요내용에 대한 것은 차기총회에 서류와 구두로 보고한다. 이사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 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1. 개최일자 및 장소
2. 출석자 수
3. 의사경과와 결과

제6장 위원회

제33조(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 과 같다.

②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및 동산으로서 협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고,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은 연 1회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추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협회의 재산 중 현금은 우편관서나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35조(재원) 협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하며 협회의 사업 및 운영 경비에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가입비
2. 연구, 용역 및 위·수탁사업 수수료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기부금 또는 보조금
4. 기본재산으로 부터 발생한 수입
5. 분담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

제36조(수익사업) 협회는 제3조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단, 그 수익은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구성원(개인)에게 분배될 수 없다.

제37조(회계의 구분) ① 협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편성·운용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8조(회계원칙) ① 협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39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사업계획 및 예산 등) ① 협회의 사업계획,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서류를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 후 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협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1조(결산) ① 협회는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를 득한 후 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대차대조표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회계감사) 협회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외부 회계법인 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제43조(결산잉여금) 협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장 해 산

제44조(해산)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에서의 해산 결의
2. 협회의 합병 또는 분리
3. 협회의 파산
4. 기타 해산사유 발생

② 협회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산인) 협회의 해산 시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임원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46조(잔여재산의 처분 및 귀속) ① 협회의 해산 시 협회 채무를 변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해산 시에는 잔여재산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9장 조직직제

제47조(구성)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기타 협회의 통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두되 회장의 명에 따라 상근 부회장이 이를 통할한다.

② 사무국, 지부의 직제와 업무분장, 인사관리,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의 2(부설조직) ① 협회는 제5조에 따른 연구·교육·홍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설조직을 둘 수 있다.

1. 영농폐자원 관련 조사연구센터
2. 홍보센터

② 조사연구센터, 홍보센터의 설립 및 직제, 담당업무, 인사관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기능) 사무국, 지부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 (업무 감독과 보고) 사무국 및 지부의 업무 감독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50조(회비 등의 반환) 협회는 단체 또는 회원이 탈퇴, 제명 등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가입비, 회비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51조(표창) 회장은 협회의 발전에 공이 현저한 사원, 회원과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52조(정관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53조(운영규정) 협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중 정관 및 제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4조(경미한 변경)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법령 개정 등 상위 규정 개정 등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
2. 각종 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한 양식의 제·개정
3. 각종 규정 중 내용의 변경이 없는 문구의 수정
4. 각종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5조(준용) 본 정관이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2022.12.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성명	주소	서명